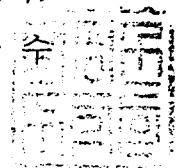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	----

제출일자 : 2000. 10. 17.

제출자 : 달성군수



□ 개정이유

-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 및 농어촌정비법 신설에 따른 관련법 변경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1994.12.22 법률 제4823호로 농어촌정비법 제정
- 1995. 6.23 대통령령 제14679호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정
- 1995. 8.12 농림수산부령 제1207호로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정
- 1999. 4.16 대구광역시조례제333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개정

□ 주요골자

-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 및 농어촌정비법 신설에 따른 관련법 변경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로 한다.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중 “법 제5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법 제125조”를 “법 제5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구역내의 법 제5조”를 “사업시행구역내의 법 제11조”로 하고, 제3항중 “법 제126조 제2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법 제132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5조”를 “법 제9조”로 하고, 제1호중 “법 제5조”을 “법 제44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u>농촌근대화 촉진법</u> (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목적) ----- <u>농어촌정비법</u> (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 ----- ----- ----- ----- -----
제 4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에 <u>법 제5조</u> 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전3항의 <u>법 제5조</u> 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몽리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 부락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 4조 (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법 제11조</u> ----- ----- ----- ----- ----- ----- ----- ④ ----- <u>법 제11조</u> ----- ----- ----- ----- ----- ----- ----- -----
제 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u>법 제125조</u>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5. (생략) ②~③ (생략)	제 6조 (위원회의 기능) ① ----- ----- 1.~2. (현행과 같음) 3. <u>법 제51조</u> ----- 4.~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사업비의 부과등) ①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u>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구역내의 법 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경비부과 기준은 토지(<u>법 제126조 제2항</u>에 의한 환지교부대상지) 지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인가가 있는 후는 환지교부 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p> <p>④~⑤ (생략)</p>	<p>제11조 (사업비의 부과등) ①----- ----- -사업시행구역내의 법 제11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법 제43조 제2항-----)----- ----- ----- -----</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2조 (토지의 가격평정)</p> <p>①~② (생략)</p> <p>③ <u>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u>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12조 (토지의 가격평정)</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법 제53조</u>----- ----- ----- -----</p>

